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도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4
----------	------

발의연월일 : 2019. 5. 7.

발 의 자 : 도일용 의원, 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기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 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법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등 분야 교류·협력사업과 군이 위 주민을 위하여 하는 제반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통일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남북교류협력 사업 관련 국장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남북교류 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군 지원 사업
2. 북한의 재해·재난 및 기근·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팀장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3.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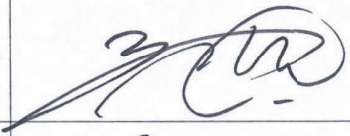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도 일 용	조길용	
김 정 태	김정태	